

보도를 통해본 우리사회의 성폭력 문제에의 접근

김 종 구
(치안연구소 경감)

I. 序 論

최근의 여중생의 교내출산, 소녀가장 집단 성폭행 사건 등 상상을 초월한 성폭력 사건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주요 중앙일간신문¹⁾에 보도된 성폭력 관련 기사를 중심으로 우리사회가 성폭력 문제를 어떻게 진단하고 있고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지 그 대책으로는 무엇을 논하고 있는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분석대상 기사는 '96. 1. 1~7.12일 까지 신문기사 중 친리안을 통해 성폭력이라는 검색어를 통해 추출한 281건의 기사내용을 기본으로 하고 본고 작성기간 중(7.12일 이후) 추가보도된 내용도 참고하였다.

대상이 된 기사의 社別 내역은 다음과 같다.

〈성폭력 관련 기사의 社別 내역〉

총건수	경향	동아	중앙	조선	한겨레	한국
281	14	34	78	64	56	35

이들 기사를 분석의 편의를 위해 내용별로 분류한 결과 아래와 같이 분류되었으며

〈성폭력 기사 내용별 분류〉

총건수	281
발생검거관련	107
재판관련	28
논설·칼럼·대담 등	28
정부·정당 시책관련	36
민간단체 분석·대담 관련	50
기타	32

신문이란 매체의 특성으로 취재원이 동일한 경우가 많아 논설 칼럼 대담 등 신문사별 자체의 기사를 제외하고는 내용이 유사하거나 중

1) 중앙 조간 일간지인 경향, 동아, 조선, 중앙, 한겨레, 한국일보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복되는 경우가 많았다.

한편 본고에서의 성폭력의 의미는 남성이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를 유심히 쳐다보거나 섹시하다 말하는 것에 대해 여대생의 60.9%가 술자리에서 여자가 따라주는 술쯤 마셔보자고 말하는 것에 대해 여대생의 73.9%가 성폭력이라고 인식²⁾(6. 13, 조선 중앙)하는 상황을 감안할 때 법률적인 의미의 성폭력이라기 보다는 우리사회가 성폭력으로 인식하고 있는 일반적인 의미 즉,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특별법이라 한다.)이나 형법상의 강간, 특수강간과 같은 심한 성폭행 뿐만 아니라, 성적으로 모욕감을 느낄 정도의 언어적인 폭력이나 성희롱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이해되어진다.

II. 性폭력 실태

성폭력의 실태와 관련해서는 정부와 민간단체의 공식통계나 설문조사, 상담결과 등이 인용되어 나타나고 있는 바, 대상신문 모두가 경찰과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자료를 주로 인용하고 있다.

1. 전체적인 성폭력 실태

최근 5년('91~'95)간 강간범죄는 연평균 9.3% 증가해 왔고 '96년 6월말 현재 강간범죄 및 성폭력 특별법 위반사건이 전년 동기란 대비 6.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경찰통계 인용, 전신문 보도)

정무장관실의 조사에서도³⁾ 조사대상 전체 여성의 35%가 버스나 지하철 등에서 성폭력을 당해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20대 여성의 경우에는 42.7%가, 서울거주 여성의 경우에는 46.5%가 성폭력 피해경험을 호소하고 있어 우리사회에 성범죄가 이미 광범위하게 확산돼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6. 25 한겨레)

이러한 경향은 신문기사 중 성폭력사범 검거와 관련된 기사 제목을 일별해 봐도 쉽게 알 수 있다.

- 「의붓딸 성폭행」 「10대소녀 성폭행범 구속」
- 「환각상태로 여고교실 침입 성폭행 기도」
- 「성폭행미수 공익근무요원 구속」
- 「성추행논란 전여중교장 고발」
- 「여고생 집단성폭행 10대 5명 영장」
- 「부녀납치 성폭행 30대 2명 구속」
- 「대낮 아파트 침입 자녀앞 성폭행」

2) 서울대가 재학생 56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3) 정무장관실이 현대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해 '96. 4. 19~5. 6일 까지 전국 20대 이상 성인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생명존중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

「친딸 상습 성폭행 40대 구속」
 「데이트 여자 납치 성폭행」
 「여자운전자 납치 성폭행 2명 구속」
 「중학생조카 성폭행 30대 구속」

평소 알고지내던 사람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가 73.7%나 차지하고 경찰통계에도 43%가 면식범에 의한 것으로 강간은 모르는 사람에게 당하는 것이라는 통념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여실히 나타내 주고 있다.

「7백여차례음란전화 10대 구속」
 「성폭행 유학생 2명 구속」 등
 대상과 연령을 초월해 성폭력이 급증하고 있고 그 형태도 근친상간부터 집단성폭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수 있다.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이상 전신문 보도)

2. 연령별 성별 분석

한국성폭력 상담소에 따르면 '95년도 성폭력 상담건수 1,021건중 13세미만의 어린이 상담이 307건으로 전체의 30.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의 '96년 상반기 분석 결과(이하 경찰통계라 함) 피해자 중 15세이하가 14.6%에 이르는 결과보다는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미성년 어린이에 대한 성폭력 피해가 심각함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대다수의 경우 성폭력 피해자는 여성이지만 남성이 피해자인 경우도 92년 2.6%에서 95년 4.8%로 매년 꾸준한 증가추세에 있고 특히 경찰통계에 의하면 피해자 중 남자가 22.7%를 차지하고 있어 남성도 성폭력의

3.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한국성폭력상담소의 「95년도 성폭력 상담 현황」에 의하면 성폭력 피해여성 중 가해자의 유형으로 평소 알고지내던 사람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가 73.7%나 차지하고 경찰통계에도 43%가 면식범에 의한 것으로 강간은 모르는 사람에게 당하는 것이라는 통념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여실히 나타내 주고 있다.

특히 아는 사람으로부터 성폭행 당한 상담 사례중 가해자가 아버지, 오빠 등 가족구성원인 경우가 18.3%, 사촌오빠 등 친인척이 9.1%로 모두 27.4%의 피해자가 친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직장상사나 동료(23.5%), 데이트 상대(12.9%), 동네사람(11.1%), 동급생이나 선후배(5.6%), 교사나 강사(3.8%) 순으로 나타났다.(이상 전신문 보도)

사단법인 대구여성의 전화 상담사례 발표에서도 상담자의 75%가 알고있는 주변사람들에 의해 성폭행을 당했다는 비슷한 결과를 보

여주고 있다.(7.13, 동아)

특히 학교, 학원 등 교육현장에서 발생한 성폭력 상담건수는 올해 고발된 성폭력상담 7백여건 가운데 3.2%인 23건을 비롯, 92년 1천2백60건 중 35건(4.3%), 93년 8백41건 중 30건(3.6%), 94년 1천3백56건 중 39건(2.9%), 95년 1천21건 중 36건(3.5%) 등으로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전신문 보도)

학교라는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장소에서 저질러지기 때문에 그동안 사회문제화 되지 않은 “학원내 성폭력은 초, 중, 고, 대학교 등은 물론 의사표현을 제대로 못하는 유아들이 다니는 유치원에서도 빈발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4. 기타 분석

이밖에도 인용된 경찰통계에 의하면 가해자의

연령별로는 14~30세 사이가 전체의 59.2%를 차지하고 있고 범행동기도 우발범행(31.8%)이 수위를 차지해 성적으로 민감한 나이에 충동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있음을 나타내고

범죄자 공범관계는 단독범(87.1%)이 대다수이나 5명이상(1.2%)도 있어 집단범죄도 무시할 수 없는 실정이며

범행시간대는 오전 0시~4시에 803건

이 발생, 전체 26.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밤 8시~밤 12시 528건(17.1%), 낮 12시~오후 6시 466건(15.1%), 오전 6시~낮 12시 272건(8.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요일별 발생건수는 수요일이 635건(20.6%)으로 가장 많았고, 월요일 543건(17.6%), 화요일 412건(13.4%), 금요일 396건(12.9%), 일요일 362건(11.8%), 토요일 352건(11.4%) 등이었다.

범행장소는 주택내 971건(31.5%), 숙박업소 및 목욕탕 434건(14.1%), 노상 394건(12.8%), 유흥접객 업소 219건(7.1%), 지하철 등 차량내 111건(3.6%) 등이었다.

검거단서는 보호자 등의 고소 고발과 피해자 본인의 신고가 각각 1,247건(41.7%) 및 883건(29.5%)으로 집계되어, 경찰의 자체인지에 의한 528건(17.7%)보다 무려 4배나 높게 나타나 성폭행 해결을 위해서는 신고가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Ⅲ. 성폭력 원인으로서는 성문화

1. 그릇된 성문화와 사회적 인식

우리사회는 대체로 심각한 성폭력문제에 대해서 개인적인 도덕성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문화적 측면의 구조적인 문제로 접근하고 있다. 즉 우리사회의 성문화 구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진단하면서 성문화의 근본적인 변혁이 시급하다고 한다.

성폭력의 원인이 되고 있는 우리사회의 잘못된 성문화는 한마

디로 성에 대한 이중적인 적용과 비뚤어진 성문화라 표현한다.(7.10,한겨레)

성에 대한 이중적인 적용이라는 것은 남성과 여성에게 성에 대해 다르게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즉, 남성이 성폭행이나 성희롱을 하게되면 최소한 그럴 수 있다고 허용하는 반면 여성이 성폭행을 당하면 짧은 옷을 입고 다니니 그런일을 당한다는 식의 여성에게 책임을 미루려고 하는 사회적인 관습을 말한다.

그리고 비뚤어진 성문화에는 여성의 성 상품화와 성적 쾌락을 부추기는 성 산업, 성물(物)화해 쾌락과 분노까지 성으로 해결하려는 성지상주의 등이 있다.

이러한 지적은 남성이라면 누구나 언제라도 가해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조장하는 성문화가 더욱 심각한 문제라는 인식에서 비롯되고 있다.

특히, 여성학자들은 성폭력이 성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의 문제라고 주장한다. 교사와 학생, 어른과 어린이, 남성과 여성처럼 권위적이고 일방적인 관계가 성립했을 때 약자에 대한 공격성이 성폭력으로 나타난다고 주장한다.(7.9, 중앙일보)

소녀가장이나, 유치원생 등 약자를 마을주

성폭력이 성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의 문제라고 주장한다. 교사와 학생, 어른과 어린이, 남성과 여성처럼 권위적이고 일방적인 관계가 성립했을 때 약자에 대한 공격성이 성폭력으로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민이나 교장, 원장 등의 강자가 함부로 성폭행한 최근의 일련의 성폭력 사건이 그 대표적 사례라고 한다.

이런 왜곡된 성문화는 텔레비전 영화 신문 등의 대중매체가 더욱 조장 강화하고 있다는 분석도 적지 않다.(7.10, 한겨레)

양해경 가족과 성 상담소 소장은 “예컨대 영화나 드라마 신문 만화 등이 성관계를 묘사하면서 여자가 ‘아니오’라고 대답할 때도 진짜 거부의사가 아니라 은근히 좋아하는 뜻의 다른 표현이라는 인식을 퍼뜨리고 있다”면서 대중매체의 폐해를 지적했다.

심영희(한양대 사회학)교수도 “텔레비전 프로그램들에서 남자가 여자로부터 성을 얻기 위해 물리력을 쓰는 장면을 자주 방영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여성과 어린이에 대한 공격을 가르치는 대중매체의 성폭력 묘사를 감시하는 시민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강간은 쾌락을 줄 수 있는 성표현의 형태가 아니라는 것, 강간이 피해자에게 오래동안 심각한 후유증을 남긴다는 것, 동의에 의하지 않은 성관계는 진정한 의미의 성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대중매체를 통해 일반인들

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도록 캠페인을 벌여나가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7월 8일 한국성폭력상담소가 각 언론사에 ‘여중생, 초등학생 성폭력사건 보도태도에 대한 항의서’를 보내 “성폭력 피해사건을 선정적으로 보도하는 자세를 지양하고 성폭력 가해자를 양산해 내는 사회구조적인 문제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촉구한 것도 이런 운동의 하나로 보인다.

2. 성문화와 피해자 보호

우리사회의 잘못된 성문화와 비뚤어진 성의식 구조는 성폭력 피해자를 적절히 보호받거나 치유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최근의 여중생 출산사건에서 피해자인 여학생이 출산할 지경이 되도록 어느한군데 자신의 고통을 호소할 수 없었고 혼날것이 두려워 자신이 당한 일을 숨길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도 결국은 우리의 잘못된 사회통념과 인식이 가한 또다른 폭력에 다름아니라고 이해한다.(7.10, 동아)

성폭력 피해자는 일반적으로 거의 회복 불가능한 정도의 정신적·신체적 후유증으로 시달리게 되고 심한 경우에는 극도의 혐오감으로 인해 자해와 자살로 까지 이어지기도 한다.(7.9, 중앙)

그럼에도 성폭력 피해자가 보호받거나 치유되기는커녕 성폭력을 개인적이고 성적인 문제

로 파악하는 사회적 인식과 남성중심의 통념으로 인해 피해자는 순결을 잃었다거나 짧은 치마를 입고 밤늦게 다니니 그런일을 당한다는 눈길을 받는 등 성폭력의 원인제공자로 몰리게 되거나(7.9, 중앙)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가해자측으로부터 협박과 회유에 시달리기도 하고 자신이 얼마나 반항했는가를 입증해야 하는 등 2중의 고통을 당하게(7.22, 조선/7.30, 세계) 된다고 한다.

이제는 미국 뉴욕타임스 칼럼난에 한 여성교수가 자신이 어떻게 성폭행 당했는지를 담담하게 밝히면서 치안대책 확립을 촉구한 것처럼 덮어두고 입에 담기를 기피할 것이 아니라 충분히 있을 수 있는 현실적으로 엄연히 존재하는 문제로서 성폭력문제가 논의되어야 한다고 한다.(7.22, 한겨레)

이러한 의식의 전환, 성문화의 변혁이 이루어질 때 피해자가 당당하게 가해자를 고발하는 풍토를 기대할 수 있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따뜻한 사회의 관심과 배려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한다.

IV. 性폭력에 대한 대응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성폭력의 만연과 그릇된 성문화 등 성폭력문제에 대해 우리사회는 어떻게 대응하고 처방책으로 무엇을 논의하고 있을까?

이에 대해 정부부문과 민간부
문으로 나누어 살피고자 한다.

정부는 정부대로.....가정은 가정대로 그 어느때
보다도 성폭력 문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 정부⁴⁾의 대응

정부에서는 대통령이 나서서 빈발하는 성폭
력 문제에 대해 국가적으로 부끄럽고 수치스
러운 일이라며 정부는 정부대로, 학교는 학교
대로, 가정은 가정대로, 성폭력을 예방하는데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하고(7.12, 조선 등
각 신문) 있을 정도로 그 어느때보다도 성폭
력 문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
다.

가. 경찰의 대응

경찰에서는 상반기 범죄분석을 토대로 성폭
력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7.15 이후
각 신문)

이에 따르면 현재 지방청 13개와 경찰서
144개 등 총 157개 관서에 운영되고 있는 여
성상담실을 전국 경찰서로 확대하고 전문상담
능력을 갖춘 여경을 배치토록하여 성폭력 피
해사례에 적극 상담키로 하는 한편,

현재 서울과 부산, 대구 등 전국 6대 도시
경찰서에서 실시중인 성폭력상담전화(경찰서
대표국번+0118) 전용회선을 전국 경찰서로
확대 설치, 연중무휴로 가동키로 했다.

또한, 과거에는 여성피해자가 경찰서를 찾

아와 조사를 받을 경우 심리적으로 많은 장애
가 있었다면서 앞으로 피해여성이 마음놓고
피해사실을 진술할 수 있도록 별도의 조사실
을 확보하여 여자경찰관이 조사하도록 할 계
획이며, 이와 함께 경찰은 파출소별로 관할구
역내 소녀가장을 일제히 파악, 방범순찰활동
시 수시로 심방활동을 벌여 성폭력피해 여부
를 확인하는 한편 청소년 지도육성회 회원이
나 독지가들과의 결연도 적극 추진 하고

이밖에 성폭력사범의 재범방지를 위해 성폭
력전과자들의 동향관찰을 강화하고 도피중인
수배자들에 대한 특별검거 활동을 주기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나. 교육부의 대응

교육부는 17일 오는 2학기부터 초 중 고등
학교의 재량시간에 집중적인 성교육을 실시토
록 하는 등 성폭력 피해에 대한 예방교육을
강화키로 하고 ‘학생 성폭력 예방교육과 대
책’을 마련, 시행중인바 대책에 따르면 성폭
력 피해예방과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
주기 위해 주당 1시간 정도인 중 고교의 수업
재량시간을 활용, 성폭력 피해예방을 위한 실
제 대응방법 등을 중심으로 성교육을 집중실

4) 정당이나 국회, 법원에서 논의되는 사항도 정부에 포함하였음

시토록 하면서 이와 관련, 여학생들에게 비상호루라기를 소지토록 하는 한편 성추행, 성폭행 위협에 고통을 치는 등 적극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실제 대처요령을 지도키로 했다.

또한 교사들에 대한 성문제 상담방법에 관한 연수 등을 통해 상담활동을 강화토록 하고 각급 학교 및 교육청에 소리함을 설치, 성폭력피해에 관한 제보사항을 접수해 처리토록 했다.

다. 정당 국회차원의 대응

정당이나 국회에서도 성폭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중에는 정당(지구당 포함)에 성폭력범죄신고센터를 직접설치하는 경우도 있다.(7.10, 각신문)

그러나, 입법을 통해 성폭력 문제를 다루거나 정부에 대책수립을 촉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법제정이나 개정이 논의되는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었다.

〈성폭력특별법의 개정추진〉

친고죄 축소, 친족범위 확대, 친부범위에 의부 포함 등을 골자로 하는 성폭력특별법 개정 논의가 있는 바, 그 주요내용은 친족에 의한 성폭행이나 장애인에 대한 성폭행, 특수강간 등에 한해서만 친고죄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는 현행 성폭력특별법을 개정,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행도 피해자의 신고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친고죄의 전면 폐지도 검토키로 하고, 또 성폭력특별법상에

규정된 친족의 범위를 4촌이내에서 8촌 이내로 확대, 친족성폭행에 대한 가중처벌의 대상을 확대하고, 지금까지 법률적으로 친족에 포함되지 않던 의부도 친족의 범위에 포함시켜 처벌에 따른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하고 이와 함께 성폭행당한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불고지죄의 도입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7.16, 조선)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추진〉

직장내 성희롱을 금지하기 위해 가해자에 대해 인사이동, 징계조치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을 명문화하도록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중으로(7.18, 조선) 개정시안에 따르면 사업주가 사업장내 성희롱 방지를 위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하는 처벌규정도 있다.

〈가칭 학교내외의 폭력 및 성폭력방지특별법 제정 추진〉

교내외 폭력 및 성폭력 취약지역에 대한 학교별 책임구역 지정 등을 골자로 한 [학교내외의 폭력 및 성폭력 방지 특별법](가칭)이 검토되고 있는데 이 법안에 학교내외의 폭력 및 성폭력 다발지역, 치안사각지대 등 취약지역에 대한 학교, 학부모, 검-경, 관할교육청 등의 관할 책임제를 실시해 폭력을 예방하고 선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한다.(7.22, 조선)

또 폭력 및 성폭력 가해-피해로 인해 정규 교과과정에서 탈락한 청소년에 대해 재입학 기회를 부여하거나 본인이 희망할 경우 직업훈련원 입소를 알선해주는 생활지도를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가부장적이고 비인간적인 사회구조속에서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왜곡된 성의식과 태도를 지닌채 살아가는 우리사회에 성폭력의 책임이 있다고 한다.

〈기 타〉

법제 개정사항은 아니지만 기타 정당쪽에서 촉구하고 있는 내용으로 대학의 가정과, 유아교육과 등에서 성교육을 필수과목으로 이수토록해 초·중·고등학생에 대한 성교육 강화, 전국 15개 시·도에 성폭력 피해자보호관리기관을 설립,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교육, 사후조치 등 지원, 범국민적 의식개혁 캠페인 전개 등의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라. 법원의 대응

재판과정에서 법원은 성폭력에 대하여 중형을 선고함으로써 형벌의 위하력을 통해 간접적으로 성폭력 방지에 기여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수원 성폭행사범 징역 20년 선고, 상습성폭행사범 징역 20년 선고와 같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살인이나 강도 등 다른 범죄와 경합범으로 처벌되어 중형을 받았음에도 언론이 자극적으로 보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형벌의 위하력을 높이고 있다는 점이다.

2. 민간부문의 대응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민간부문에서는 성폭력문제를 사회구조적인 문제라는 시각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다.

즉 가부장적이고 비인간적인 사회구조속에서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왜곡된 성의식과 태도를 지닌채 살아가는 우리사회에 성폭력의 책임이 있다고 한다.(7.11, 동아)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이하에서는 먼저 민간부문이 어떤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민간부문에서 주장하고 있는바를 살펴보고자 한다.

가. 민간단체의 활동상

신문지상에 거론되는 단체들만해도 한국성폭력상담소, 가족과 성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YMCA 청소년성상담실, 나눔의 집 등 성폭력 활동을 하는 단체가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 단체는 성폭력 등에 대한 상담뿐만 아니라 상담결과를 분석하거나 설문조사 등을 통해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하고 성폭력 예방수칙을 마련하여 발표하기도 한다.

때로는 공동대책위를 구성하여 성범죄에 대한 엄단을 촉구하거나 법제개정을 요구하기도 한다.

성폭행으로 불가피하게 출산한 미혼모들을

보호하는 홀트아동복지회관, 애란원 등 민간 단체도 있다.

성교육 전문센터를 개설하여 성교육을 실시하기도 하고(5.15, 중앙), 병원등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실시하기도 한다(7.20, 조선) 청소년 성폭력 근절 캠페인을 벌이기도 한다.

성폭력에 대한 법적 제도적 미비나 정부의 무관심속에서도 우리사회의 각 분야에서 성폭력문제에 대한 다각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성폭력특별법의 개정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민간단체가 성폭력문제와 관련하여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으로 성폭력특별법 개정이 있다. 성폭력특별법이 시행된지 2년이 지났지만 성폭력범죄는 줄지 않고, 피해여성들은 여전히 성폭력 위협에 시달리고 가해자는 마음놓고 거리를 돌아다니고 있는 것은 성폭력특별법의 허점이 큰 원인중의 하나라고 한다.

성폭력특별법의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성폭력범죄가 여전히 「정조에 관한 죄」로 규정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피해여성이 폭력범죄의 피해자가 아니라 순결을 상실, 정조를 지키지 못했다고 보는 성차별적인 사고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결과 피해여성들은 늘 「자신이 얼마나 반항했는가」를 법정에서 입증해야만 하며 그 과정에서 수치심 때문에 여성들은 신고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가해자인 남성이 자신이 성폭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것과는 정반대다.

다음은 성폭력을 친고죄로 적용한 현행 법규정이다. 「제3자는 고소할 수 없고 피해자 당사자만이 고소할 수 있다」는 친고죄 규정 때문에 주변에서 성폭력사건을 알고도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한다.

또한 가해자가 이 규정을 악용함으로써 피해사실이 은폐되고 있으며 가해자들의 가중된 폭력 혹은 상습적인 폭력을 조장하고 있다고 한다.

성폭행 사실을 알게 된 모든 사람은 즉각 경찰에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불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미국의 제도와 완전 배치된다.

친족 성폭력 부문 역시 심각한 실정이다. 현행 특별법에서는 친족의 범위를 4촌이내의 혈족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친족으로 통용되고 있는 관계에서 벌어지는 성폭력을 처벌할 수 없다. 대표적 예가 의부에 의한 성폭력, 최근 대법원에서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존속 또는 친족의 범위에 「의부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려 의부에 의한 성폭력을 처벌할 수 없게 됐다.

성폭력사건의 처리에 있어 본인이 원할 경우 재판심리만 비공개로 할 수 있게 한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규정대로라면 경찰이나 검찰 수사단계에서는 사건이 공개

또는 반공개적이 되는걸 감수해야 하는데 이 때문에 피해자들이 신고를 기피한다.

여성은 폭압의 대상이 아니라 인격존중의 대상임을 교육하고, 더욱이 성폭력을 남성들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야만적 죄악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야 한다.

「내가 언제 그랬느냐, 가만두지 않겠다」며 협박하는 가해자 앞에서 사실을 입증하기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한다.(7.30, 세계)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성폭력특별법 개정이 정부와 국회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바, 민간 부문에서의 논의가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결과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다. 성교육에 관하여

우리사회에 만연해 있는 문란한 성풍조와 무책임하고 비인간적인 성행동을 철저히 배격하기 위해서는 성교육이 무엇보다도 절실하다고 한다.(7.10)

특히 온갖 정보에 무차별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의 성교육을 중시하고 있다.

더욱이 청소년들에게 마려처럼 흡수되는 성정보라는 것들은 하나같이 비정상적이고 변태적인 타락정보들이다. 뿐만 아니라 이같은 타락정보들을 현실생활 속에서 실습(?)해 볼 수 있는 기회도 엄청 많아졌고 집앞에서 몇발 짝만 나서면 갖가지 [유곽형]업소들도 널려 있고 성인들의 타락도 극에 달해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성교육이라는 것이 해부학적 지식에 그치고 있고 그나마 그런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청소년도 많은 실정이라고 지적한다.

성교육의 내용은 생물학적 지식보다 성심리 교육 또는 성의식 교육이어야 하고 성교육은 인성심리교육의 일환으로 전인교육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한다.

청소년들에게 성의 참된 의미와 성공동체의 윤리실천을 위한 심성적 접근방법을 가르치되 성충동을 극복할 수 있는 심리적 기술들을 포함해서 홍수같은 영상매체의 끔찍한 유혹과 현실적 유혹들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를 훈련해야 한다고 한다.

특히 남자청소년에게는 여성은 폭압의 대상이 아니라 인격존중의 대상임을 교육하고, 더욱이 성폭력을 남성들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야만적 죄악이라는 것, 남성에게 완력을 준 것은 약자를 보호하라는 것이지 가혹행위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 자신의 성행동이 상대방을 임신시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버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야 한다고 한다.

비디오를 제작해 성폭행 당한 여성이 얼마나 극심한 고통에 몸부림치는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토론식, 참여식 강의로 올바른 성의식의 내면화를 도모하는 한편 그리고 여자 청소년에게는 남성들의 독특한 성심리와 위기 대처 요령을 알려줘야 한다고 한다.

교육부는 학교청소년, 노동부는 근로청소년, 문체부는 일반청소년에 대해 성심리 교육에 나서고 근로청소년과 군인청소년에게도 유사한 배려를 해야 한다고 한다.

교재를 개발하고 지도자를 양성해야 하는 한편 가정교육자료도 제작 배포하고 언론매체도 참여해야 한다. 청소년들을 위한 성상담 체계를 구축하고, 피해 여자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을 지도해야 한다고 한다.(이상 7.21, 조선)

라. 기타 논의

이 밖에도 성폭력과 관련하여 성폭력에 대한 문제의식을 심어줌과 동시에 그에 대한 대처와 예방법을 제공하고 가해자의 후속교육 참여, 피해자의 후속치료 프로그램, 예방 프로그램 개발, 성폭력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의 전환, 성문화의 변화 등이 논의되고 있다(4.1, 한겨레)

V. 맺음말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보도를 통해 나타난 성폭력 문제에 대한 시사점을 요약해보면

첫째, 우리사회에 성범죄가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으며 특히 피해자 측면에서 유아·어린이 등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이, 가해자 측면에서 친족·교사 등 아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 문제가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성폭력 만연의 근본원인은 우리사회의 잘못된 성문화와 사회 통념에서 비롯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성폭력 피해자가 제대로 보호받거나 치유받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셋째, 성폭력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된 가운데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다양한 대책과 활동이 정부와 민간단체를 포함한 전 사회분야에서 경주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우리사회의 노력이 보다 생산적이 되고 효율화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몇가지 제언하고자 한다.

1. 통합 조정 지원

정부적 차원에서는 무엇보다도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각분야의 하부체제(Sub-System)의 활동을 체계적으로 연결시키고 상호보완 할 수 있도록 통합·조정하고 지원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서, 지금까지 민간부문에 일임해오다시피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구호·치유에 국가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공적구호기관의 설치·확대 등 정부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할수도 있겠지만, 민간에서 행하고 있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2. 경찰의 대책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경찰이 성폭력 문제에 대한 대응에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수사절차에 있어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배려가 부족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물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성상담실을 전 경찰서로 확대하고 여성피해자를 위한 별도의 조사실 확보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하에서는 좀 더 이들 대책이 보다 충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몇가지 제언하고자 한다.

가. 여성상담실의 내실화

성폭력 피해자의 신고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것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나 자료를 제공하기도 하고, 아울러서 관련기관 단체, 경찰이 서로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고 유기적 연계하여 성폭력 문제에 공동대처해 갈 수 있도록 여성상담소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확대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1) 민간단체 활동자료의 수집, 정리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많은 민간단체가 성폭력 상담 구호 등의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이들 단체가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떻게 이용할 수 있고 어디에 위치하고 전화번호는 무엇인가 하는 등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

피해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나 자료를 제공하기도 하고, 아울러서 관련기관 단체, 경찰이 서로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고 유기적 연계하여 성폭력 문제에 공동대처해 갈 수 있도록 여성상담소의 역할을 확대 강화해야

고 안내하려는 노력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성폭력 피해자는 자신이 당한 피해를 호소하고 상담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 전문가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피해자 지원단체 또는 피해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연락처와 상담창구를 경찰이 적극적으로 소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여성상담실에서 민간단체나 전문가 등의 기본현황을 정리하여 알기쉽게 기재한 팜플렛이나 소책자 등으로 제작하였다가 필요한 성폭력 피해자에게 제공하여 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요망된다.

2) 범죄예방과 교육목적 측면에서의 역할

성폭력을 당하지 않기 위한 예방수칙 등 정보를 수집하여 누구나 쉽게 입수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이외에도 여성상담실은 학교나 사회의 성교육·상담등과 같은 경우에 경찰과 민간단체 학교간에 필요한 자료나 정보의 제공, 강사의 교류 등 유기적인 협조의 연결고리로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성폭력 관련정보의 수집창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나. 피해자의 수사과정에서의 취급

1) 성폭력에 대한 이해와 교육

수사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자 조사시 수사관의 언행·태도가 피해자의 심리상황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성폭력 피해자는 성폭력 자체만으로도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한층 더 상처받기 쉽고 '수사과정에서 농락당했다', '내기분을 알지 못한다'라고 쉽게 피해의식에 젖기도 한다.

그러나 경찰은 일상적으로 많은 사건을 취급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일상적인 것으로 대하려는 위험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성범죄피해자의 수사에 관하여 피해자의 심리·조사의 방법을 수사관에게 충분히 교육시킬 것이 필요하다. 이 점에서 뉴욕의 성범죄수사반의 경우 일년에 일주일씩 피해자 심리학 강습과 성범죄수사의 방법을 가르치는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바⁵⁾, 경찰교육 과정에도 성폭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2) 여성수사관과 별도 조사공간의 확보

성폭력 피해자는 앞서서 언급했지만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가장 피해를 받기 쉬운 존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개선책을 시행하지 않는 것은 피해자의 신고를 곤란하게 하고 수사상 필요한 자료를 수집 곤란하게 만

들 우려가 있다.

특히 성범죄피해자(여성)에 대한 수사가 대부분의 경우 남자경찰관에 의해 행해진다고 하는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일반적으로 청취되는 내용이 매우 세부적이고 섬세한 것이기 때문에 여성들은 이성에게 대하여 말하기 어려운 감정을 가지고 있고, 현실적으로 남성수사관이 상대가 되면 긴장하거나 또는 남성이라고 하는 것만으로 거부감을 나타내 말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남성수사관에게 말하기 거부해하여 남성수사관에게 질문받는 것을 기피하는 피해자도 있다.

이 점에 대하여 영국⁶⁾에서는 대부분의 경찰이 성범죄피해자의 신고가 있는 경우 여성수사관이 좋은가 남성수사관이 좋은가를 피해자에게 물어 가능한 한 그 희망에 따라 대응하고 있으며, 런던 경찰청에서는 야간에도 경우에 따라 피해자가 여성 징복경찰관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여성경찰관이 조사를 하게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여성경찰인력은 약 1,200여명으로 전체경찰관의 1% 정도밖에 안되며 그 활용도 면허·민원실·교통·소년에 치중되어 있는 현실인 바 여경에 대한 정원을 대폭적으로 증원하고 이들을 성폭력 등 대 여성범죄 현장에 투입하여 신고·상담에서부터 수사

5) 일본『警察의「被害者對策」에 관한 研究會』報告書 警察學 論集 제49권, 115면, 1996

6) 일본『警察의「被害者對策」에 관한 研究會』報告書 警察學 論集 제49권, 114면, 1996

에 이르기까지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를 위해서도 우리경찰의 여경에 대한 통념이나 인식의 전환이 요청되고 있음은 말할 나위가 없다.

아울러서 예산의 제약과 사무실 부족 등 여건이 좋은 것은 아니나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별도의 조사공간 확보가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3) 아동에 대한 배려

16세 미만의 피해자의 경우에는 현행법상 선서무능력자로 규정되어 있는 취지에 상응하여 피해자의 신청이 있으면 피해자 신문에 신뢰할만 한자, 즉 보호자나, 친구 등의 동석을 허용하는 것이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아주 어린아이인 경우 미국에서와 같이 진술 내용을 비디오테이프에 담아 반복 진술을 피할 수 있도록 하고, 상담전문가의 동석을 허락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